

# 충청북도의회에서 증인등 비용지급에관한조례(안)

의안 번호	37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94. . . .

제출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(대통령령 제14317호 94.7.6) 으로 충청북도의회에서 증인, 감정인 및 참고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
- 비용지급의 예외, 지급일수의 계산, 지급의 제한 등을 규정하기 위함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을 운임, 현지교통비, 숙박료, 식비로 규정(안 제2조)
- 나. 비용지급의 예외로 충청북도의회의원, 청원인, 충청북도 의회에 출석.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, 소속기관에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,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(안제3조)
- 다.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함을 규정(안 제4조)
- 라.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증인등이 충청북도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산정함을 규정 (안 제5조)
- 마.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(안 제6조)

## 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36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5
-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